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가합50454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피 고 1. A

2. B

변 론 종결 2015. 10. 30.

판결 선고 2015. 11. 13.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40,399,504원 및 그 중 240,399,073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5. 5. 2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3. 12.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12. 30. 접수 제200589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A은 원고에게 240,399,504원 및 그 중 240,399,073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5. 5. 2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아래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따라 부담할 대출금 상환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한편 아래 각 신용보증약정서(갑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에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보증인은 원고에 게 위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그에 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4. 12. 19.부터 연 12%이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원래의 보증기한 (변경된 보증기한)	대출과목
1	2009. 2. 18.	200,000,000	2010. 2. 17. (2015. 2. 13.)	중소기업자금대출

2	2011. 9. 9.	59,500,000	2012. 9. 7. (2015. 9. 4.)	
---	-------------	------------	------------------------------	--

나. 피고 A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1차 보증일에 200,000,000원을, 위 2차 보증일에 70,000,000원을 각 대출을 받았으나 2014. 11. 6.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12. 19.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241,712,953원(= 1차 보증 대출원금 180,000,000원+ 1차 보증 대출이자 1,572,065원 + 2차 보증 대출원금 59,500,000원 + 2차 보증 대출이자 640,888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A으로부터 1,313,88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A은 2013. 12. 30. 아내인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12. 30. 접수 제2005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신용보증약정상의 의무이행에 따라 피고 A은 원고에 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241,712,953원과 ② 위 이행금액에 대한 2014. 12. 19. 1일의 이자 79,467원(= 241,712,953원 × 연 12% × 1/365, 원 미만은 버림)의 합계에서 3 2014. 12. 19.자 피고 A의 변제금 1,313,880원을 공제한 나머지 240,478,540원(=241,712,953원 + 79,467원 - 1,313,880원)의 범위 내로 원고가 구하는 240,399,504원및 그 중 240,399,073원에 대하여 위 보증채무 이행 및 변제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4.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5. 5. 23.까지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되어 2003. 6. 1. 시행된 것)에서 정한 연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015. 10.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은 연 15%이므로, 위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A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 B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바이고, 피고 B은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A은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다(한편 피고 B은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 A에게 회복시킬 경우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해진다고 주장하나, 위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적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먼저 사해행위취소권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와 피고 A이 이 사건 증여계약일(2013. 12. 30.) 이전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위 증여계약일 이후인 2014. 12. 19.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라 피고 A에 대하여 240,478,540원 및 그 중 일부금액에 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1 내지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위 증여계약일 이전인 2013. 11.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76,00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일까지도 유지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12. 30.경 피고 A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2013. 12. 경을 기준으로 그 평균 매매가격이 170,000,000원 내지 190,0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위 증여계약 이전에 있었던 C의 가압류가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당시까지 유지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 A의 대출금 상환 연체로 인하여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그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이상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2014. 12. 19.을 기준으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중 원금(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금)만 하더라도 239,500,000원(= 1차 보증 180,000,000원 + 2차 보증 59,500,000원)으로, 그로부터 약 1년 전인 2013. 12. 30.경에도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원금이 위 금액 이상이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당시 피고 A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170,000,000원 내지 19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피고 A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이처럼 피고 A이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이 이 사건 부동산을 아내인 피고 B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2) 다음으로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 이상, 피고 A은 피고 B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태수, 판사 손영언, 판사 이현석